

직 제 규 정

전문개정	2004. 5. 4
개정	2004.10.25
개정	2004.12.29
개폐	2005. 7. 7
개폐	2005. 9. 2
개정	2006.12. 8
개폐	2007. 1.15
개정	2008. 1.14
개정	2009. 2.10
개정	2011. 3.29
개정	2012. 2.16
개정	2012. 9. 4
개정	2013. 1.30
개정	2014.10.31
개정	2015. 4. 3
개폐정리	2015. 6.30
개정	2015.12.10.
개정	2017. 2.14
개폐정리	2017. 4. 6
개정	2017. 8.28
개정	2017.11.27
개정	2018. 4.27
개정	2018. 7.30
개정	2018.12.21.
개정	2019. 6.17
개정	2019.12.13
개정	2020. 2.17
개정	2020. 6.26
개폐정리	2020. 9. 9
개정	2020.12.21
개정	2021. 5.21
개정	2021.12.24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조직, 직원, 직무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조직”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을 말하며, 그 구성단위를 조직단위라 한다.
2. “직책”이라 함은 보직을 일컫는 말로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.
3. “직무”라 함은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배분된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, 의무 및 권한의 집합을 말한다.
4. “부서”라 함은 단, 실, 처, 연구원과 지사, 센터를 말한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., 2013.1.30., 2017. 8.28, 2019. 6.17>
5. <삭제 2006.12.8>
6. “영업부서”라 함은 지사, 센터 및 출장소 등 영업조직 및 장소를 말한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13.1.30>
7. <삭제 2006.12.8>
8. <신설 2005.9.2><삭제 2013.1.30>

제3조(적용) 직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직제의 편성) ①직제는 직능의 분화에 따라 구분되는 조직단위로 편성하며, 조직단위로서 본부, 단, 실, 처, 연구원, 지사, 센터 등을 둔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11.3.29., 2013.1.30., 2017. 8.28, 2019. 6.17>

②공사에는 경영전략본부, 금융사업본부, 자산관리본부, 주택도시기금본부, 사장 직속기구인 홍보실, 감사위원회 직속기구인 감사실을 두며, 각 본부 소속하에 부서를 둔다. 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11.3.29, 2012.9.4.,

2013.1.30., 2014.10.31., 2015. 4. 3, 2015.12.10., 2017.11.27., 2018. 4.27, 2018. 7.30, 2018.12.21., 2019. 6.17, 2019.12.13., 2020. 2.17, 2021. 5.21> <개폐정리 2015. 6.30>

③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단에 실 또는 처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9. 6.17>

④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역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., 2013.1.30.><기존 제3항에서 이기 2019. 6.17>

⑤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·처 또는 팀 단위의 임시조직 또는 협의 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><개폐정리 2020. 9. 9><기존 제4항에서 이기 2019. 6.17>

⑥출장소는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. <기존 제5항에서 이기 2019. 6.17>

⑦공사의 조직도는 [별표1]과 같다.<개폐정리 2015. 6.30><기존 제6항에서 이기 2019. 6.17>

제4조의2(임시조직) ①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운영목적, 운영형태,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직제담당 부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직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임시조직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운영목적의 타당성
2. 운영형태의 적합성
3. 운영기간의 합리성
4. 인원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

③ 임시조직의 장은 임시조직의 설치목적이 달성 또는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폐지나 다른 팀 또는 조직과의 통합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기간이 있는 임시조직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 폐지되며, 임시조직의 장은 임시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제담당 부서장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직제담당 부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임시조직을 폐지하거나 다른 팀 또는 조직과 통합하여야 한다.

⑤ 임시조직의 장은 임시조직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운영결과를 직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21.12.24]

제5조(본부의 편성) ① 각 본부는 다음 각목의 부서로 구성한다.

1. 경영전략본부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07.1.15, 2009.2.10, 2012.2.16., 2012.9.4., 2015.12.10>
 - 가. 기획조정실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>
 - 나. 인사처<개정 2015.12.10.><삭제 2017.02.14.><신설 2019.12.13.>
 - 다. 성과재무처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., 2017.11.27., 2018.12.21., 2020.12.21>
 - 라. 경영지원처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9.12.13., 2020.12.21>
 - 마. ICT추진실<개정 2017.02.14., 2017.11.27., 2019.12.13., 2020. 6.26>
 - 바. 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><삭제 2018. 4.27><신설 2019.12.13.><삭제 2020. 6.26>
 - 사. 리스크준법실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, 2019.12.13., 2020.12.21>
 - 아. <신설 2017.11.27.><개정 2019.12.13.><삭제 2020.12.21.>
 - 자. 주택도시금융연구원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, 2017. 8.28> <삭제 2018.12.21.><신설 2020. 2.17>
 - 차. <삭제 2015.12.10., 2017.02.14.>
 - 카. <삭제 2015.12.10., 2017.02.14.>
 - 타. <삭제 2015.12.10., 2017.02.14.>
2. 금융사업본부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08.1.14, 2009.2.10, 2012.2.16, 2013.1.30>
 - 가. 금융기획실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>
 - 나. 개인보증처<신설 2020.12.21.>
 - 다. 금융심사처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., 2020.12.21>
 - 라. 동부PF금융센터<개정 2012.2.16., 2013.1.30., 2019. 6.17><기존 다목에서 이기 2020.12.21>
 - 마. 서부PF금융센터<개정 2012.2.16., 2013.1.30., 2019. 6.17><기존 라목에서 이기>
 - 바. 남부PF금융센터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, 2019. 6.17><기존 마목에서 이기>
 - 사. 중부PF금융센터<신설 2017.02.14.><개정 2019. 6.17><기존 바목에서 이기>
 - 아. 서울북부지사<개정 2013.1.30.,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 <기존 사목에서 이기>
 - 자. 서울동부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<기

존 아목에서 이기>

차. 서울서부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<기
존 자목에서 이기>

카. 서울남부지사<개정 2013.1.30., 2017.02.14.><기존 차목에서 이기>

타. 인천지사<신설 2020.12.21.>

파. 경기북부지사<신설 2020.12.21.>

하. 경기남부지사<신설 2020.12.21.>

거. 부산울산지사<개정 2013.1.30., 2017.02.14.><기존 카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너. 대구경북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<기존 타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더. 광주전남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<기존 파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러. 대전충남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<기존 하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머. 강원지사<신설 2014.10.31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
2017.04.06.><기존 너목에서 이기 2020. 6.26><기존 더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버. 충북지사<신설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<기존 더목에서 이
기 2020. 6.26><기존 러목에서 이기 2020.12.21.>

서. 전북지사<신설 2013.1.30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
2017.04.06.><기존 러목에서 이기 2020. 6.26><기존 머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어. 경남지사<신설 2013.1.30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
2017.04.06.><기존 머목에서 이기 2020. 6.26><기존 버목에서 이기
2020.12.21.>

저. 스마트전세지원센터 <신설 2019.12.13.> <기존 버목에서 이기 2020.
6.26><기존 서목에서 이기 2020.12.21.>

3. 자산관리본부<신설 2005.9.2.><개정 2006.12.8, 2007.1.15, 2008.1.14., 2013.1.30.,
2015.12.10., 2017.11.27>

가. 채권관리실<개정 2011.3.29, 2013.1.30>

나. 보증이행처<개정 2011.3.29, 2013.1.30>

다. 서울북부관리센터<개정 2013.1.30>

라. 서울동부관리센터<개정 2013.1.30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
마. 서울서부관리센터<개정 2013.1.30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
바. 영남관리센터

사. 중부관리센터

4. 주택도시기금본부<신설 2015. 4. 3><개정 2017.11.27.>

가. 기금관리실<신설 2015. 4. 3><개정 2018. 7.30>

나. 기금지원처<신설 2018. 7.30>

다. 도시재생기획처<신설 2017.11.27.>

라. 도시재생심사처<신설 2017.11.27.><개정 2020.12.21.>

마. <신설 2018.12.21.><삭제 2020.12.21.>

바. <신설 2017.11.27.><삭제 2019. 6.17>

사. <삭제 2015.12.10.>

아.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<신설 2017.11.27.><개정 2018. 7.30, 2019. 6.17>

자.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<신설 2017.11.27.><개정 2018. 7.30, 2019. 6.17>

차.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<신설 2018. 7.30><개정 2019. 6.17>

카.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<신설 2015. 4. 3><개정 2017.02.14., 2017.11.27., 2019. 6.17>

타.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<신설 2017.02.14.><개정 2017.11.27., 2019. 6.17>

파. 기금대출지원센터<신설 2018. 7.30>

하. 리츠자산관리센터<신설 2019.12.13.>

②홍보실은 사장의 직속기구로 한다.<신설 2018. 7.30> <개정 2018.12.21., 2019. 6.17, 2019.12.13., 2020. 2.17, 2021. 5.21>

③<신설 2019. 6.17><삭제 2019.12.13.>

④<신설 2018. 4.27> <삭제 2018.12.21.>

⑤<삭제 2015.12.10.>

⑥감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 한다. <개정 2006.12.8., 2011.3.29.>
<기존 제4항에서 이기>

⑦<신설 2005.9.2, 삭제 2006.12.8>

제6조(분장업무) ①본부장은 본부내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>

②본부와 부서별 분장업무 및 업무관할구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개

정 2005.9.2, 2013.1.30>

제3장 직원 및 직무

제7조(직원의 구분 및 정원) ① 직원은 관리직원, 계약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인력운용상 필요에 따라 기술직원, 전산직원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.<개정 2005.9.2>

② 직급별 정원은 [별표2]와 같다. <신설 2020.12.21.>

③ 조직단위별 정원의 배정 및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3.1.30., 2020.12.21><개폐정리 2020. 9. 9>

제7조의2

[본조신설 2005.9.2.][본조삭제 2019.12.13.]

제8조(직책) ① 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.

②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며, 그 소속하에 팀장을 둘 수 있다. 또한 부서내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역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, 2013.1.30>

③ 직급별 직책부여기준은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

제9조(직무) ① 조직단위의 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직원은 소속 조직단위의 장을 보좌하고, 그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③ 팀장 또는 역은 소속 조직단위의 장을 보좌하고, 그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, 팀장 또는 역의 명칭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<개정 2011.3.29.><개폐정리 2020. 9. 9>

제10조(직무의 위임) ① 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직무대행) ①조직단위의 장에 결원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둘 수 있다.

②조직단위 장의 사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차하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소관 본부장이 직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2조(사장에 대한 위임사항)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

1. 지사·센터의 명칭 및 업무구역<개정 2005.9.2, 2013.1.30>
2. 부서내 팀의 정수 및 편제<개정 2006.12.8, 2011.3.29, 2013.1.30>
3. 출장소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4. 본부별 소관부서의 지정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폐정리 2020. 9. 9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대전지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지점은 대전지점을 설치하여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4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및 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 <2004.10.25>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4.12.29>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7.7>

이 규정은 200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9.2>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12.8>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7. 1.15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문서규정 등 다른 사규의 “고객지원팀”을 “총무팀”으로 한다.

부 칙 <2008.1.14>

이 규정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2. 10>

이 규정은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 3. 29>

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2. 16>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9. 4>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1. 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센터, 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금융센터, 경남지사 및 전북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4. 11. 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사 및 강원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5. 4. 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금융센터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

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5. 6.30>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2.10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4.6>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7.11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금융1센터 및 도시재생금융2센터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8. 4.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

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8. 7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8.12.2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9. 6.1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9.12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마트

전세지원센터 및 리츠자산관리센터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“집행임원운영규정”을 폐지한다.

부 칙<2020. 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 등의 개정) ①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시행세칙 제6장 제34조를 제2장제12조로 한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서내팀운영지침 별지의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경영전략본부로 이기한다.

부 칙<2020. 6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20. 9. 9>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2.2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북부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사규의 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2조 및 [별표8]을 삭제한다.

부 칙 <2021. 5.21>

이 규정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2.24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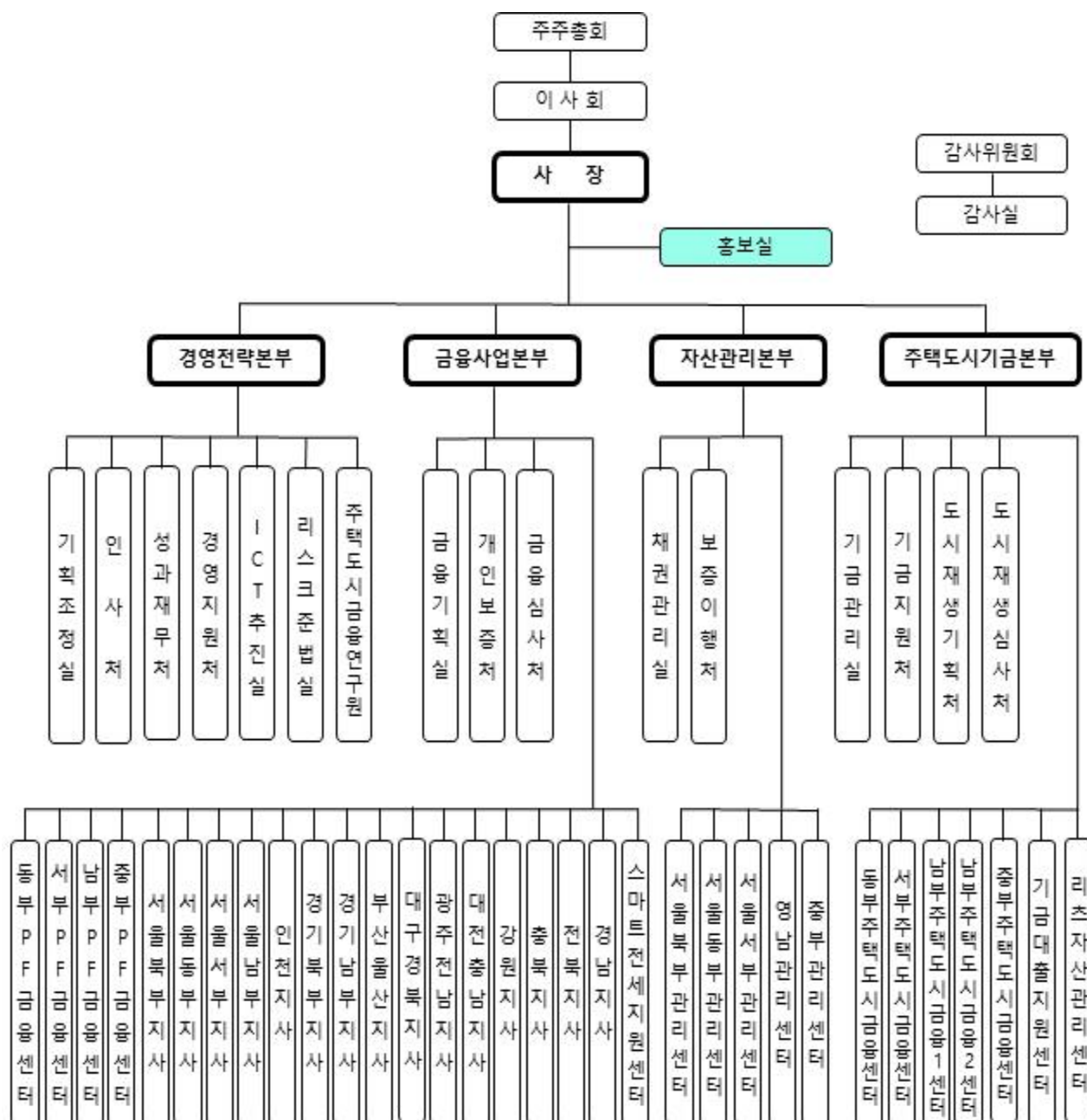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[별표2]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[별표2] 정원표 내의 2022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(제4조 관련)<개정 2004.10.25, 2004.12.29, 2005.7.7, 2005.9.2, 2006.12.8, 2007.1.15, 2008.1.14, 2009.2.10, 2011.3.29, 2012.2.16, 2012.9.4., 2013.1.30., 2014.10.31., 2105. 4. 3, 2015.12.10., 2017.2.14., 2017.8.28., 2017.11.27., 2018. 4.27, 2018. 7.30, 2018.12.21., 2019. 6.17, 2019.12.13., 2020. 6.26, 2020.12.21., 2021. 5.21>, <개폐정리 2017.4.6.>

조 직 도

■ 4본부 8실 9처 1연구원 15지사 17센터



[별표2](제7조제2항)<신설 2020.12.21.><개정 2021. 5.21., 2021.12.24>

정 원 표

(단위 : 명)

구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-6급	7급	업무 직원	경영 직원	계
2021년	5	24	30	123	276	411	24	2	50	945
2022년	5	24	30	125	304	446	24	-	82	1,040

*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별도정원 제외